제 안 요 청 서

- 효율적인 공항시설 투자평가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-

국 토 교 통 부 신공항기획과

목차

│. 과업의 개요3
□. 과업 내용4
Ⅲ. 과업수행지침6
□V. 제안 일반사항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∨.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20
VI. 평가방법 및 기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Ⅷ. 관련 서식

과업의 개요

1. 과업명

ㅇ 효율적인 공항시설 투자평가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

2. 과업의 배경

○ 본 과업은 최신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(공항부문)과 '14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공항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는 '공항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(제3판)'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항정책 및 사회·경제적 여건 변화 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공항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3. 과업기간

-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(270일)로 함
- 단,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
- **4. 용역금액**: 100,000,000원(금일억원정, 부가가치세 포함)

1. 효율적인 공항시설 투자평가의 필요성

- 1)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법적 근거와 성격
- 2) 최근 공항시설 투자사업의 이슈와 전망

2.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지침 검토

- 1) 시설계획 및 비용추정의 개선사항 검토
 - 시설계획, 공사비 원단위, 운영비 등 비용추정 관련 갱신사항 검토
 - 국내외 최신 자료를 활용한 공항시설별 설계기준의 갱신사항 검토
 - 국내 최신 사례 분석을 통한 시설 소요면적 산출 원단위, 공 사비 적용단가 등의 갱신사항 검토
 - ㅇ 비용산출 방법론 관련 개선사항 검토
 - L/S, A/S 규모 산출방법론의 개선사항 검토
 - 운영비 산출방법론의 개선사항 검토
- 2)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 관련 개선사항 검토
 - 항공수요예측 관련 개선사항 검토
 - 기초자료(KTDB O/D,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, 공항 이용객 O/D 자료 등) 갱신사항 검토
 - 항공여객수요예측 방법론의 개선사항 검토
 - 항공화물수요예측 방법론의 개선사항 검토
 - 항공수요예측 관련 추가 이슈 검토
 - Top-down, Bottom-up 방식의 수요예측 방법론
 - 국내선 내륙노선

- 도서공항 유발수요
- 공항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의 반영
- 지상수요
- ㅇ 편익 산정 관련 개선사항 검토
 - 항공 통행시간가치 등 편익 원단위 갱신사항 검토
 - 편익 산정 관련 추가 이슈 검토
 - 신규 편익 항목 검토
 - 공항이전에 따른 소음의 부(-)편익 이전과 소음피해 보상비
- 3) 경제성 분석 관련 개선사항 검토
 - 경제성 분석기간(개항 후 30년)에 대한 국내·외 사례 검토
- 4) 정책성 분석 관련 사회적 가치 고려 방안 검토

3.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개선 방안 제시

- 1) 시설계획 및 비용 추정 관련 개선(안) 제시
- 2)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 관련 개선(안) 제시
- 3) 경제성 분석 관련 개선(안) 제시
- 4) 정책성 분석 관련 사회적 가치 고려 방안(안) 제시 및 작성 예시

Ⅲ 과업수행지침

1. 일반지침

- 1)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,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**착수계**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.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.
- 2)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,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매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,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4)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
- 5)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6)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.
- 7)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- 8)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 하게 추진하여야 한다.

- 9)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세부 조사·연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10)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,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.
- 11) 과업수행자가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
2. 과업보고

- 1) 착수보고 : 계약 후 **14일 이내**에 세부연구항목, 연구수행방법, 추진 일정계획(예정공정표 포함),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.
- 2) 중간보고 : 과업의 중간보고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보고한다.
- 3) 최종보고 :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30일 전에 보고 한다.
- 4) 월별보고 : 본 과업의 추진상황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당월까지의 추진내용, 추진공정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- 5) 수시보고 :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.

3. 세부과업지침

1) 용어의 해석

○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,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가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처리한다.

2)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

-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 내용 및 용역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.
-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상의 과업 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.
- 본 과업 수행 중에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,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3)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

-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 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4) 자문회의

○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,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・보완 할 수 있다. ○ 자문회의 개최시기(일정) 및 자문사항은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5) 성과품 소유

-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.
 - *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를 준용한다.
-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,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. 다만,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(국가 안전보장, 국방, 외교관계 등)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.

6)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

○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7)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

○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,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8)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

-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, 발주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.
- 계획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
-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파단될 때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

9) 기타사항

- 용역계약 후 제안요청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, 기타 행정기관 등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.
- 연구추진과정에서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.
- 사업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타 계정과 구분 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- 과업 과정에서 용역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 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, 용역기관은 전적으로 손 실 배상의 책임을 진다.
- 용역기관은 과업완료 후라도 용역성과에 대한 누락, 오류,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재검토·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·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4.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

□ 일반사항

- 1)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.
- 2)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30일 전에 최종보고서(안)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.
- 3)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,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이에 따라야 한다.

□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

1) 보고서 작성

-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-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2) 과업 성과품의 제출

구 분	제출 시기	제출수량	비고
 착수보고서	계약 후 14일 이내	10부	과업수행계획 포함
 중간보고서	발주처 협의	10부	
최종보고서(안)	준공일 30일전	10부	
최종보고서 (최종본 및 요약본)	준공검사원 제출 시	각 40부	USB 1개 포함

[※]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5. 보안대책

- 1)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"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(국토교통부 훈령 제906호, ´17.7.13)"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,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제한한다.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·부 보안책임자를 지정·관리하여야 한다.
- 3)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하여서는 안된다.
- 4)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·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,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5)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.
- 6)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성과품 작업 시 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7)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,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.
- 8)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 도에 따라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·관리하여야 한다.
- 9)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 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하며,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생한 원지, 폐지 등의 자료는 정·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·소각하여야 한다.
- 10)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하여야 한다.
- 11)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 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 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.
- 12)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13)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,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 (삭제)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.
- 14)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"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"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보 안 서 약 서

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.
- 2.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,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

년 월 일

소속 :

직위 :

성명 :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6. 예정공정표

7 H	표 준 공 정								
구 분	1M	2M	3M					8M	9M
1. 효율적인 공항시설 투자평가의 필요성									
2.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지침 검토									
가. 시설계획 및 비용추정의 개선사항 검토									
나.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개선사항 검토									
다. 경제성 관련 개선사항 검토									
라. 정책성 분석 관련 사회적 가치 고려 방안 검토									
3.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지침 관련 개선 방안 제시									
가. 시설계획 및 비용 추정 관련 개선(안) 제시									
나.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 관련 개선(안) 제시									
다. 경제성 분석 관련 개선(안) 제시									
라. 정책성 분석 관련 사회적 가치 고려 방안(안) 제시 및 작성 예시									
3. 전문가 자문회의									
4. 보고									
가. 착수보고									
나. 중간보고									
다. 최종보고 및 보고서 마무리									

IV

제안 일반사항

□ 제안서의 효력

-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
-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,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
-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,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
-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
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
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
-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

□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,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
-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기술하고 제안 요청서에 별지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 하여야 함

-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의거 정확하고 명료하게 A4용지 30매 이내로 한글로 작성
-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함
-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,
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,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
-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증빙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의 끝에 첨부
-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조건부이행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
-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,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 함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
 수 없으며,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
-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
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
-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·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

□ 제안서 제출

가. 제출기간 : 입찰공고문 참조

나. 제출방법 : 온라인(e-발주시스템) 제출

다.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

○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신공항기획과(044-201-4144, 4139)

라. 제출서류 : 입찰공고문 참조

□ 유의사항

1. 가격입찰방식(전자입찰)

○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,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(부가 가치세 포함)으로 기재

2.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

-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『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』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,
-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『청렴계약서』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 하여야 함

3.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

-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·공개할 수 없음
-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『보안서약서』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

Ⅵ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

- □ **입찰 참가자격**(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 - 1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제27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 - 2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2조(경쟁 입찰의 참가자격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(입찰참가자격요 건의 증명)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 - 3) 학술부문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(업종코드: 1169)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
 - 기술부문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에 엔지니어링사업 (도로, 공항)(업종코드: 3578)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
 - 4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・ 소상공인 확인서(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)를 소지한 자
 - 단, 학술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 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
 - * <소기업 · 소상공인 확인서>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하며,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(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)
 - * 공동수급(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)을 허용하며,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「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. 「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2조 의2(단,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)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

□ 계약 상대자 선정방법

- 1. 선정방식 :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- ○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
 -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(계약예규 제515호, 2020.9.24.)
-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%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
 -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
 - ※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,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

2. 선정절차

- (1)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
 - 평가비율: 기술평가(80%), 가격평가(20%)
 - 종합평가점수 = 기술 평가점수 + 입찰가격 평가점수
 - ㅇ 동점시 처리방침
 -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

(2) 기술평가

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
(3) 가격평가

-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"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"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
-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

(4)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

-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% 이상인 자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함
-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
-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(기술평가 점수+가격평가 점수)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
-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
- ㅇ 동점시 처리방침
-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,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

VI

평가방법 및 기준

1. 제안서(기술)평가(80점)

가. 평가항목 및 배점

	평가요소	배점	평가요소	평가 방법	비고
1	재무구조· 경영상태	10	 자산, 자본, 부채비율 등(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 부설연구소,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10점 부여) 	계량 평가	주1)
2		15	연구인력의 전문성참여 연구인력 보유현황(10점)연구인력의 전문성(5점)	"	주2)
3	인력·조직· 관리기술	5	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(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) 	"	주3)
4		10	° 과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°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	비계량 평 가	주4)
5	기술·지식 능력	30	연구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성과물 활용연구성과 도출 방향	"	주4)
6	과업수행계획	30	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과업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성과도출 결과의 적정성	"	주4)
	À	100			

주1) 계량평가(10)

- 재무구조·경영상태(10)

구 분	배 점					
·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	(E)	100%이상	90%이상	80%이상	70%이상	70%미만
(자기자본/총자산)/기준비율	(5)	5	4	3	2	1
· 최근년도유동비율	(E)	100%이상	90%이상	80%이상	70%이상	70%미만
(유동자산/유동부채)/기준비율	(5)	5	4	3	2	1

※ 기관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기준이며, 기준비율은 입찰참여 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함(참여기관 중 1개 기관이라도 '21년 기준이 없을 경우 '20년 예산기준으로 평가)

주2) 계량평가(15)

- 참여 연구인력 보유현황(10)

구 분	4인 이상	3인	2인 이하
 배 점	10	6	2

- ※ 교통 등 관련분야 전공 석사·박사급 참여 연구인력 수
 - 연구인력의 전문성(5)

구 분	5년 이상	4년 이상	3년 이상	3년 미만
참여연구원의 평균경력	5	4	3	2

* 해당연구와 관련된 박사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절사

주3) 계량평가(5)

-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등 징계횟수

구 분	매우우수(0회)	보통(1회)	미흡(2회 이상)
 배 점	5	3	0

*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

주4) 비계량평가(70)

- 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

구 분	매우우수	우수	보통	보통 다소미흡	
 배 점	배점 × 1.0	배점 × 0.9	배점 × 0.8	배점 × 0.7	배점 × 0.6

나. 평가점수 산정

○ 점수 : 기술능력평가득점 × 80%

2. 입찰가격평가(20점)

- 입찰가격 평가 일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하되, 개찰 장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로 한다.
 - ※ 기획재정부 계약예규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」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가격을 평가

VII

관련 서식

- 1-1. 과업제안서(표지, 원본)
- 1-2. 과업제안서(표지, 사본)
- 2. 보안서약서
- 3. 청렴계약서
- 4. 서약서
- 5. 제안업체(기관) 일반현황
- 6.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
- 7. 연구진(책임연구원) 이력사항
- 8. 첨부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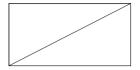
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

- 1. 과업제안서 (양식 1-1 활용)
- 2. 제안서 내용 (양식 1-2 활용, A4용지, "아래한글" 활용, 30페이지 이내)
- 3. 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약서 (양식 2 및 3 활용)
- 4. 서약서 (양식 4 활용)
- 5. 제안업체(기관) 일반현황 (양식 5 활용)
- 6.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(양식 6 활용)
- 7. 연구진(책임연구원) 이력사항 (양식 7 활용)
- 8. 첨부자료
 - 각종 증빙자료(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 자료 : 양식 8)
 -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

과 업 제 안 서

용역명 : 효율적인 공항시설 투자평가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

업체명: (인)



과 업 제 안 서

용역명 : 효율적인 공항시설 투자평가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

기술제안 평가용

보 안 서 약 서

1. 서약자

- 회사명 :
- 소재지 :
- · 직책(직위):
- 성명 :

2. 내용

본인(본사)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『효율적인 공항시설 투자평가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』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- 본 사업에서 습득한 **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**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 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**외부에 누설·공개 또는 무단** 유출하지 않겠습니다.
-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본사가 민·형사 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.

2022년 월 일

위 서약인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확인자 : 대표이사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청 렴 계 약 서

당사는 「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」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,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,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・설계・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, 당사의 임・직원과 대리인은,

- 1.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, 결의,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.
 -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.
 -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 -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, 아래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
 - 1. 입찰자: 입찰금액의 100분의5
 - 2. 계약상대자: 계약금액의 100분의10
- 2. 입찰·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·간접적으로

금품·향응 등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.

- 이를 위반하여 입찰·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-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- 입찰·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- 3.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.
 -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 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.
- 4. 입찰·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'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'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

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,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,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,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- 5. 회사 임·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.
- 6. 본 건 입찰·계약체결·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, 서류열람,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- 7.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
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,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,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·형사상 어떠한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22. . .

서 약 자 : ○○○회사 대표 ○○○ (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<양식 4>

서 약 서

상호(법인)명 : 주 소 :

본인은 「효율적인 공항시설 투자평가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」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22. . .

상 호: 대표자 성명: (인)

사업자등록번호: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제안업체(기관) 일반현황

1. 회사(기관)명				2. 대	표 자	
3. 용역등록 분야						
4. 주 소						
5. 대표 전화번호						
6. 설 립 연 도			년	월	일	
7. 주 요 연 혁						
	7 4	201017	1 000		202117	(단위 : 백만원)
8. 예 산 규 모	구분 총자산	2019년	202	10년	2021년	비고
(최근 3년간 자산, 자본,	자기자본					
부채 등 재무구조를 파악	유동자산 유동부채					
할 수 있는 자료)	부채비율					
,	매출액					
9. 상시 종업원수						
10.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						

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

분 야	성명	생년월일	직위	주요경력(관련분야)	학위 또는 자격사항

주)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.

연구진(책임연구원) 이력사항

성 명	소속		직 책		연 령	세				
학 력	 전	공	해당분여	 야 경력	년	월				
본 용역 참여임무			학위 또는	자격사항						
주 요 경 력										
용역명(논문명) 참여 (년월	참여기간 (년월 ~ 년월)		담당업무		비고				

- 주) 1.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.
 - 2.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

용역(연구) 수행실적

건명	개요	용역금액 (백만원)	발주처	용역(연구) 기간	비고

- 주) 1. 국가 및 지자체, 공공기관*에서 발주한 최근 5년간(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) 유사업무 연구용역 2천만원 실적(단일건 기준)을 일자 순으로 기재
 - * 공공기관의 범위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지정한 공공기관을 말함
 - 2.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
 - 3.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
 - 4.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(최종보고서 표지 및 연구진 구성 관련 면 사본) 등 증빙자료 첨부